

울산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4나1308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4나13081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4. 5. 10 선고 2023가단2380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

A

피고,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

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찬

변론종결 2024. 9. 5.

판결선고 2024. 10. 17.

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. 5. 10. 선고 2023가단2380 판결

주문

-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피고는 원고에게 18,104,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4. 1.부터 2024. 10. 1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

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.

3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,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4,508,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6. 29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3. 부대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8,104,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 2면 1의 다항 4행의 ‘절차에서’ 다음에 ‘2018. 12. 26.’을 추가하고 같은 행 ‘배당되었다.’를 ‘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.’라고 고쳐 쓰고, 같은 면 라항 1행의 ‘대리인으로’ 다음에 ‘2021. 6. 23.’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‘위 배당금을’을 ‘이자가 가산된 배당금으로 201,729,291원을’으로 고쳐 쓰며 같은 항 2행의 ‘입금받은 후’ 다음에 ‘2021. 6. 24.’를

추가하는 것 외에는,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성공보수 약정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나. 반환 약정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설령 승소한 판결금의 10%를 성공보수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판결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기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. 6. 28. 원고의 대리인이자 배우자인 B에게 판결금 중 장래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에 관하여는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판결금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이미 수령한 성공보수금 54,681,870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배당을 통하여 회수한 201,729,291원의 10%에 상당하는 20,172,929원을 제외한 나머지 34,508,941원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555조에 따라 2023. 11. 3.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해제한다고 주장하나, 위 약정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이를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,508,941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6,404,56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. 4. 1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. 5. 10.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,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8,104,3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. 4. 1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. 10. 17.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피고가 위 약정일인 2021. 6. 28.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, 위 약정 당일에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바로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,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유진현, 판사 박성규, 판사 설정은